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61 발의연월일: 2020. 11. 18.

발 의 자:이병훈·이장섭·민형배

박성준 • 주철현 • 이상헌

민홍철 • 유정주 • 신영대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방자치 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고 시행(2015. 1. 1.)됨.

그러나 그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여러 차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사업 추진이 부진 한 상황임.

한편, 수도권에 집적된 산업기능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중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지역개 발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 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6호까지의"를 "제7호까지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에"를 "제5호 및 제6호에"로 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중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제25조제1항 중 "제6호까지의"를 "제7호까지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을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제6호까지의"를 "제7호까지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를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제안) ① 시장·군수·구청	변경 제안) ①
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u>제6호까지의</u> 규정에 해당하는	제7호까지의
자는 시·도지사에게 지역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지역개	제19조(시행자의 지정) ①
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	
(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	
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	
는 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	
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	
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중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등

-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 ⑨ (생 략)
-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① 제19조제1 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 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 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 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 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시 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u>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u> <u>7.</u>
<u>제5호 및 제6호에</u>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 ①
제7호까지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있다.

② ~ ④ (생 략)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기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급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u>제7호까지의</u>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 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3조(원형지의 공급 등) ① 제1 7 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제19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 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 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 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원형지의 공급 등) ①
<u>ৰা7ই</u>
<u>.</u>

- 1. ~ 5. (생 략)
- ② ~ ⑨ (생 략)
- - ① ② (생 략)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③ -----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 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 킬 수 있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 ① ② (현행과 같음)
 - 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